

수 원 지 방 법 원

제 9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7가합7747	집행판결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No. 071 of 2005 중재사건에 관하여 중재인 토마스 케네디 그랜트(Tomas Kennedy-Grant), 마이클 황(Michael Hwang), 볼프강 쿤(Wolfgang Kühn)이 2007. 2. 13.에 한 중재판정 중 별지1. 기재 부분은 이를 승인하고 이에 기한 집행을 할 수 있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집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기재의 중재판정 중 별지2. 가 부분을 승인 및 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이하 '원고회사'라 한다)는 독일에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자동차용 필터제품 분야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선두기업이고, 피고(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자동차용 필터제품의 생산, 판매 및 응용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민국 법인이다.

나. 원, 피고회사는 2003. 1. 3. 원고회사가 피고회사에게 특정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한국 자동차시장에 판매하기 위한 공기 및 액체 여과장치 분야의 특정 여과 제품의 조립, 제조, 마감 및/또는 포장에 관한 일반적인 기술을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술지원 및 상표 라이선스 계약(Technical Assistance and Trademark License Agreement, 이하 '이 사건 기술지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기술지원계약에 관하여 원, 피고회사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은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국 제중재센터의 중재 및 조정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하기로 하고, 중재판정은 최종적이며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회사는 2005. 10. 27. 원고회사에 대하여 '원고회사가 이 사건 기술지원계약에서 정해진 기술지원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피고회사의 시정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기술지원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서면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회사는 2005년 12월경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에 피고회사의 2005. 10. 27.자 이 사건 기술지원계약의 해지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원고회사가 이 사건 기술지원계약을 위반함으로써 야기된 손실 및 손해에 대한 배상 등을 신청하였으며, 토마스 케네디 그랜트(Tomas Kennedy-Grant), 마이클 황(Michael Hwang), 볼프강 쿤(Wolfgang Kühn)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부'라 한다)는 2007. 2. 13. 피고회사의 이 사건 기술지원계약의 해지가 무효임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중재판정(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 중재판정의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원, 피고회사 사이에 진행된 위 중재절차를 '이 사건 중재절차'라 한다).

2. 뉴욕협약의 적용과 이 사건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요건

대한민국은 1973. 2. 8. ① 대한민국법상 상사관계의 분쟁에 한해서, 또한 ② 내국 중재판정일지라도 그 외국이 이 협약의 체약국인 경우에 한해서 적용한다는 유보선언 하에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이하 '뉴욕협약'이라고 한다)에 가입·비준하였고, 위 협약은 1973. 5. 9. 조약 제471호로 발효되었다.

한편, 이 사건 중재판정이 내려진 싱가포르 또한 뉴욕협약에 가입되어 있고, 원, 피고회사 사이에 이 사건 기술지원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대한민국법상 상사관계의 분쟁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하여는 뉴욕협약이 적용된다.

뉴욕협약 제4조에 의하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정당

하게 인증된 중재판정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과 중재합의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다만 위 중재판정이나 중재합의가 중재판정이 원용될 국가의 공용어로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인 또는 선서한 번역관, 외교관 또는 영사관에 의하여 증명된 번역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정당하게 증명된 이 사건 중재판정의 등본 및 이에 대한 공증인에 의하여 증명된 번역문, 중재합의를 포함하는 이 사건 기술지원계약서의 등본 및 이에 대한 공증인에 의하여 증명된 번역문을 제출하였으므로 뉴욕협약 제5조의 거부사유가 없는 한 이 사건 중재판정은 승인 및 집행할 수 있다.

3. 이 사건 중재판정 중 별지1. 제1항 부분에 관한 피고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회사는, 중재법이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제도 이외에 승인판결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서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만을 규정하고 승인판결을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외국판결의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급부청구권을 표시하여 급부를 명하는 내용이 아니면 집행판결이 이루어질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외국중재판정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급부청구권을 표시하여 급부를 명하는 내용의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만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 중 구체적인 급부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닌 별지1. 제1항 기재 부분에 대한 승인 및 집행판결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은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제도만을 두고 있을 뿐 승인판결제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중재법 제37조 제1항은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승인 또는 집행판결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뉴욕협약 제 3조는 '각 계약국은 중재판정을 다음 조항에 규정한 조건 하에서 구속력 있는 것으로 승인하고 그 판정이 원용될 영토의 절차규칙에 따라서 그것을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재판정에 대하여는 국내중재판정이든 외국중재판정이든 구분없이 승인 및 집행판결이 모두 가능하다. 중재판정의 집행은 승인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중재판정의 내용이 강제집행을 요하지 않는 경우(예를 들어, 중재신청이 기각된 경우 등)에는 중재판정의 집행과 별도로 중재판정의 승인을 구할 필요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이 '외국법원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하여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위 법문상으로는 집행판결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은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력 있는 이행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해석됨에도, 외국법원의 혼인무효나 취소판결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집행판결을 받아야만 호적정정신청 또는 호적신고를 할 수 있는 실무상의 필요에 의하여 이행판결이 아닌 외국법원의 혼인무효나 취소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이 갖추어졌음을 이유로 한 집행판결이 선고되고 있는 하급심 실무례를 고려해보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만이 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외국중재판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급부청구권을 표시하여 급부를 명하는 내용의 중재판정, 즉,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만이 가능함을 전제로 한 피고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이 사건 중재판정의 거부사유에 관한 피고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회사의 주장의 요지

피고회사는, 이 사건 중재절차에서 아래와 같이 현저하게 피고회사의 방어권이 침

해되었으므로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나)호의 승인 및 집행거부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1) 원고회사는 이 사건 중재판정부의 2006. 5. 10.자 결정에 따른 문서제출의무를 실질적으로 전혀 이행하지 않고, 다만 피고회사의 주장·입증에 무용한 일부 자료를 형식적으로 제공하는데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원고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회사는 크랭크실 환기용(CCV) oil separators 도면이 소위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중재판정부에게만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피고회사는 이를 열람조차 하지 못하게 하였다.

(3) 원고회사가 피고회사에게 최초로 제공한 S-엔진 오일필터의 설계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중재절차에서 전혀 쟁점으로 제기되거나 주장된 바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피고회사가 S-엔진 오일필터의 최초 설계에 대한 하자를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회사에게 불리한 판단을 하였다.

나.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나)호의 취지 및 판단기준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나)호에 의하면 '중재판정이 불리하게 원용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이나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고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기타 이유에 의하여 방어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집행국 법원이 중재판정이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게 되어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는 위와 같은 사유로 당사자의 방어권이 침해된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어권침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용인할 수 없는 경우만으로 한정되는 것이라고 해석되고, 또 중재당사자의 방어권보장은 절차적 정의실현과 직결되어 공공의 질서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므로 이는 집행국인 우리나라

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 등 참조).

다. 사실인정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 5호증, 을 제9 내지 24호증, 을 제42 내지 49호증, 갑 제10 내지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기술지원계약의 주요내용

해당 조문	내용
제1조(정의) 제6호	'기술정보'라 함은 원고회사가 현재 소유하고 있고,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고 피고회사에게 자유롭게 공개할 수 있으며, 원고회사의 판단에 의할 때, 숙련된 제조업체가 계약제품을 제조, 사용 및 판매함에 있어 합리적으로 필요한, 계약제품의 제조, 사용 및 판매와 관련된 설계, 도면 및 기타 기술 및 판매 문서와 정보를 의미한다.
제3조(기술정보 노하우에 대한 교육)	원고회사는 피고회사가 계약제품을 제조하도록 피고회사에게 원고회사가 이용할 수 있는 기술정보를 제공한다.
제9조(계약기간, 해지 및 해지의 효력)	① 본 계약은 발효일로부터 개시하여 본 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조기에 해지되지 않는 한 2005. 12. 31.까지 유효하다. ② 본 계약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서면통지를 발송한 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각 당사자에 의하여, 상대방이 본 계약에서 정한 어떠한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계약 제4조에서 규정한 수수료와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는 것 또는 라이선서의 품질규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 그 위반을 치유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치유하지 않은 경우. 단, 같은 형태의 위반이 계속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지 가능하다.
제12조(분쟁해결 준거법)	본 계약은 독일법에 따라 규율된다.

(2) 이 사건 중재판정의 내용

(가) 피고회사가 주장한 아래 표 사항란 기재 각 사항에 관한 원고회사의 이 사건 기술지원계약의 위반에 대한 이 사건 중재판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번	사항	주장사유	판단 내용
1	Porous Ducts	시스템에 관한 몇 가지 정보요구에 적시 및 적절히 응하지 않음	2개의 이메일 중 1개의 이메일에 대한 답변 지연을 의무위반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피고회사의 주장은 배척
2	HC Trap	여섯 차례에 걸친 정보제공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지연해서 응함	여섯 가지 요청 중, 한 가지 요청(2005. 6. 13.자 이메일)의 한 가지 항목에 대한 답변 미제공을 의무위반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피고회사의 주장은 배척
3	공기청정기	두 개의 이메일에 대하여 답변이 없었음	한 개의 이메일에 대한 답변 미제공을 의무위반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피고회사의 주장은 배척
4	CCV Oil Separators	2005. 6. 13.자 이메일에서 요구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2005. 6. 13.자 이메일에서 요구되는 정보는 원고회사가 제3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어서 피고회사에게 제공할 의무가 없음을 이유로 피고회사의 주장 배척
5	오일필터	4개의 이메일에 대하여 답변이 없었음	4개 중 3개의 이메일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않았으나, 원고회사가 오일필터 샘플을 제공하여 피고회사의 요청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의무위반 아님을 이유로 피고회사의 주장 배척
6	S-엔진 오일필터	최초에 하자 있는 설계를 제공하고, 하자가 나타난 이후에 제대로 된 설계를 신속히 제공하지 않음	최초 제공된 설계의 하자를 입증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피고회사의 주장 배척
7	부족한 기술교육	계약기간 동안 기술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제공된 교육의 질에 비판적이기는 하나, 의무위반으로까지 볼 수는 없음을 이유로 피고회사의 주장 배척

(나) 피고회사가 2007. 10. 27.자로 이 사건 기술지원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및 유효하게 해지하였는지에 관하여,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독일법상 계속

적 계약의 해지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해지를 한 당사자에게 합의된 계약 종료일이나 통지기간의 만료 시까지 계약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대방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어야 하고, 해지가 최후의 수단에 해당되어야 하며,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위반 당사자에게 합리적인 기간 내에 위반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데, 피고회사가 원고회사에 보낸 2005. 9. 14.자 서신이 이 사건 기술지원계약의 중대한 위반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서면통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회사로서는 2005. 10. 27.자 해지통지 이전에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술지원계약의 기간만료 2개월 전인 2005. 10. 27. 원고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남은 두 달 동안 계약관계를 지속하게 할 수 없는 원고회사의 중대한 법률 또는 계약위반이 있어야 함에도 피고회사는 이에 대한 아무런 근거를 제기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회사의 2005. 10. 27.자 이 사건 기술지원계약의 해지는 무효이다'고 판단하였다.

(3) 문서제출과 관련한 이 사건 중재절차의 진행

(가)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2006. 5. 10. 피고회사의 2006. 4. 7.자 문서제출요청과 관련하여 원고회사에게 2006. 5. 26.까지 아래 각 문서를 피고회사에 제공할 것을 결정하였는데(이하 '2006. 5. 10.자 결정'이라 한다), 다만, 아래 ②항 기재 문서에 관하여는 피고회사가 기밀유지명령에 따른 각서를 원고회사에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① 공개된 정보 또는 피고회사에게 공개할 수 없는 정보의 수준과 관련된 내부승인절차를 포함하여, 피고회사의 반복적인 기술지원 요청에서 비롯된 피고회사에 대한 원고회사의 응답과 관련한 원고회사의 엔지니어/직원들간에 주고받은 모든 내부

문서(특히, 이메일 문서)의 사본

② 별지3. 기재의 각 문서

(나) 원고회사는 2006. 5. 19. 이 사건 중재판정부에 피고회사가 요구하는 특정 모델(부품번호 39 310 70 900) 이 사건 오일분리기의 경우, 위 부품이 매우 오래된 부품 이어서 위 부품과 관련된 디자인 오작동모드 영향분석보고서(D-FMEA), 제품 오작동모드 영향분석 보고서(P-FMEA), 품질관리계획 및 벤치마킹 보고서를 가지고 있지 않고, 위 부품에 대한 디자인 기준 도면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원고회사의 다른 고객의 기밀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고객의 재산이므로 문서제출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오일분리기의 디자인 기준 도면과 이와 관련된 OEM계약서를 송부하였으나, 피고회사에게는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원고회사는 사후에 피고회사에게 OEM계약서를 제공하였다).

(다) 피고회사는 2006. 5. 24. 이 사건 중재판정부에 원고회사가 문서제출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문서는 원고회사의 이 사건 기술지원계약상의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서라고 주장하면서 원고회사의 변경신청을 무시해달라는 취지의 서신과 보냈고, 피고회사의 대리인은 같은 날 원고회사에 위 (가) ②항 기재 각 문서를 기밀로 취급하고 중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서약하는 내용의 각서를 보냈다.

(라) 원고회사는 2006. 5. 26. 피고회사와 이 사건 중재판정부에게 14종의 문서(갑 제14호증의 2)를 제출하고, 이 사건 오일분리기의 디자인 기준 도면은 이 사건 기술지원계약상의 비밀유지대상이라는 이유로 피고회사에 제공하지 않았다.

(마) 피고회사는 2006. 5. 30. 이 사건 중재판정부에 원고회사가 2006. 5. 26.

제공한 문서는 피고회사의 요구와 맞지 않는 무용한 문서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회사에게 2006. 5. 10.자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추가문서 제출을 지시할 것을 신청하였다.

(바)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2006. 6. 5.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회사의 변경요청 및 피고회사의 추가문서제출지시 요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① 원고회사의 변경요청에 대하여

'원고회사가 이 사건 오일분리기와 관련된 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에 관하여 주장을 하였으나, 그 주장의 진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지 못하였고, 피고회사가 이 사건 오일분리기에 관련된 정보가 피고회사가 생산하려는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원고회사가 이 사건 오일분리기에 관련된 정보가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고서는 피고회사에게 제공할 수 없는 정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회사에 대하여 불이익 추론을 하는 것은 중재판정부가 결정할 문제이다.'

② 피고회사의 추가문서제출지시 요청에 대하여

'본 사건의 내용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되지 않은 특정 문서 또는 특정 종류의 문서가 공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고, 다만 피고회사가 원고회사가 제공했어야 할 문서를 제공하지 못한 점을 입증할 경우, 피고회사는 이 사건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원고회사에 대한 불리한 추론을 신청할 수 있다.'

(사) 피고회사는 2006. 6. 22. 이 사건 중재판정부에 '원고회사는 여전히 위 (가) ②항 기재 각 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아)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이 사건 중재판정에서 원고회사가 제출한 OEM계약

서, 피고회사의 직원인 C, 피고회사가 지명한 기술자인 D의 증언 등을 토대로 피고회사가 원고회사에 요청한 이 사건 오일분리기와 관련된 정보가 제3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정보라고 하는 원고회사의 항변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판단하고, 원고회사가 이 사건 오일분리기의 디자인 기준 도면을 피고회사에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하여 원고회사에 불리한 사실을 추정하지 않았다.

(4) S-엔진 오일필터에 관한 분쟁경위 및 이 사건 중재절차의 진행

(가) 원고회사는 2003. 7. 22. 피고회사에게 S-엔진 오일필터 설계도를 처음으로 제공하였는데, 피고회사의 설계기술자가 2004. 4. 29.부터 2004. 6. 5.까지 원고회사로부터 S-엔진 오일필터의 개발 및 설계에 관한 상세교육 및 정보를 제공받으면서 최초 설계도의 사본을 수령하였고, 피고회사는 2004년 10월경 현대자동차에 S-엔진 오일필터의 표준모델을 제공하였다. 피고회사는 2005. 2. 23. 원고회사에게 S-엔진 오일필터의 시험제작샘플에 문제가 있다는 서신을 보냈고, 이에 관한 원, 피고회사 실무자들 사이의 서신교환이 있는 다음, 피고회사는 2005. 3. 29. 원고회사에게 '원고회사가 제공한 도면에 의하여 설계한 오일필터의 배수밸브가 녹은 것이 발견되어 현대자동차의 엔지니어들이 원고회사가 제공한 설계를 신뢰하지 않고, 이러한 종류의 설계가 생산되고 있는지에 관한 입증을 요구하고 있다'는 취지의 서신을 발송하였고, 이에 원고회사는 같은 날 피고회사에게 'Audi와 Peugeot/Citroen 엔진에 본 설계를 적용하여 생산하고 있고, 한국에서의 현지 생산을 위하여 선택한 고무자재의 혼합물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으며, 피고회사는 2005. 4. 8. 원고회사에게 '현재 현대자동차는 원고회사가 특허 및 설계권고를 한 스프링 및 배수밸브의 설계검인정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서신을 송부한 후, 원고회사는 피고회사에게 두 차례에 걸쳐 프레

젠테이션을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회사는 원고회사가 최초로 제공한 설계도와 프레젠테이션 당시 제공된 샘플 오일필터 간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고 수정된 설계도면을 요구하였다.

(나) 피고회사는 이 사건 중재절차에 제출한 2006. 4. 21.자 '변소 및 반소 진술서'에서 원고회사가 최초로 제공한 설계는 원고회사가 적용하지 않는 용적 및 허용 오차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사용되는 디자인이 가지고 있었을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았으며, 원고회사에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의 직원인 E과 전문가인 D의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원고회사는 F의 증언 등에 의하여 최초 제공된 설계에 하자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었다.

라. 판단

(1) 문서제출과 관련된 피고회사에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서 본 이 사건 중재판정부의 2006. 5. 10.자 결정내용, 2006. 6. 5.자 결정내용 및 그 경위, 이 사건 중재판정의 내용과 함께, 피고회사가 2006. 5. 26. 원고회사로부터 2006. 5. 10.자 결정에 따른 문서를 제공받고도 이 사건 중재절차에서 원고회사가 2006. 5. 10.자 결정에 따라 제공하였어야 할 문서를 특정하거나 구체화하여 지적하지 못한 사정(이 사건 변론과정에서도 이러한 점은 명시적으로 주장되지 않았다)을 고려하면, 원고회사가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오일분리기의 디자인 기준 도면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관하여 이 사건 중재판정부의 2006. 5. 10.자 결정을 따르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원고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중재판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피고회사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2) 이 사건 오일분리기의 디자인 기준 도면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회사가 이 사건 중재판정부의 2006. 5. 10.자 결정에 의하여 제출하였어야 할 문서 중 이 사건 오일분리기 디자인 기준 도면을 이 사건 중재판정부에만 송부하고, 피고회사에게는 이를 제공하지 않았으나, ① 이 사건 기술지원계약에 따르면 원고회사는 제3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기술정보를 피고회사에게 제공할 의무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원고회사가 제출한 OEM계약서, 피고회사의 직원인 C, 피고회사가 지명한 기술자인 D의 증언에 의하여 이 사건 오일분리기와 관련하여 피고회사가 원고회사에게 요구한 정보가 원고회사가 제3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정보라고 판단하였던 것이고, 이 사건 오일분리기의 디자인 기준 도면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위와 같은 판단을 한 것은 아닌 점과 함께, ③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3호 다목에서 '직업 또는 기술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문서제출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347조 제4항에서 '법원은 문서가 제344조의 제출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문서를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여, 법원이 다른 당사자의 참여 없이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회사가 이 사건 오일분리기의 디자인 기준 도면을 이 사건 중재판정부에만 제공하면서 피고회사에게는 제공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현저히 피고회사의 방어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3) S-엔진 오일필터와 관련한 피고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서 본 S-엔진 오일필터와 관련한 원, 피고회사 사이의 분쟁경위, 이 사건 중재절차에서의 양 당사자들의 주장·입증내용 및 이 사건 중재판정의 내용

에 의하면 원고회사가 피고회사에게 최초 제공하였던 S-엔진 오일필터 설계의 하자문제는 원고회사의 이 사건 기술지원계약의 위반사항의 하나로서 피고회사에 의하여 주장되어져 온 사항이라 할 것이고, 피고회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중재절차에서 쟁점으로 되지 않았던 사항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고회사의 방어권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중재절차에서 피고회사의 방어권이 현저히 침해되었음을 전제로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나)호의 승인 및 집행거부사유가 있다는 피고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회사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중재판정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피고회사에게 166,666,667원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하여 중재통지에 대한 답변서 제출일(2006. 1. 13.)부터 이 사건 중재판정일인 2007. 2. 13.까지 연 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4,502,283원(원 미만 버림) 합계 181,168,9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중재판정에 의한 원, 피고회사의 각 상대방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중재판정일에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회사의 원고회사에 대한 위 채권을 이 사건 중재판정일자 기준환율(1달러:936.60원)에 의하여 미화로 환산하면 미화 193,432.57달러(소수 둘째 자리 이하 버림)가 되므로 이를 이 사건 중재판정 중 별지2. 가 (2)항의 원고회사의 피고회사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면 원고회사의 피고회사에 대한 채권은 1,164,741.01달러가 남는다.

원고회사는, 피고회사가 이 사건 중재판정에 기한 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따로 승인 및 집행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중재판정의 성립 이후 채무의 소멸과 같

은 집행법상 청구이의의 사유가 발생하면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나)호의 공공질서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20134 판결 참조)과 당사자 사이의 편의와 공평에 근거한 상계제도의 취지 및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중재판정이 승인 및 집행요건을 갖춘 이상, 원고회사가 이 사건 중재판정에 기한 승인 및 집행판결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회사가 원고회사에 대한 이 사건 중재판정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상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별도로 승인 및 집행판결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중재판정 중 별지1. 기재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영화 _____

판사 신영철 _____

판사 고승환 _____

별지 1.

1. 원고가 청구한 대로, 피고의 TATLA의 해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법률 및 기타 중재비용으로써 미화 1,164,741.01달러를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는 싱가포르 달러 484,554.30의 중재비용을 지급한다. 중재비용은 먼저 원고 및 피고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에게 지급한 공탁금 중에서 지급된다. 원고 및 피고는 중재비용 전액 지급에 대하여 공동 및 개별적으로 책임을 진다. 피고는 원고에게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에 공탁한 금액에서 원고가 지급한 중재비용의 해당 부분을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별지 2.

가. 원고회사의 신청에 대한 판정부분

- (1) 원고회사가 청구한 대로, 피고회사의 이 사건 기술지원계약(TATLA)의 해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2) 피고회사는 원고회사에 대하여 원고회사의 법률 및 기타 중재비용으로써 미화 1,358,173.58달러를 지급하여야 한다.
- (3) 피고회사는 싱가포르 달러 484,554.30의 중재비용을 지급한다. 중재비용은 먼저 원고회사 및 피고회사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에게 지급한 공탁금 중에서 지급된다. 원고회사 및 피고회사는 중재비용 전액 지급에 대하여 공동 및 개별적으로 책임을 진다. 피고회사는 원고회사에게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에 공탁한 금액에서 원고회사가 지급한 중재비용의 해당 부분을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회사의 신청에 대한 판정부분

- (1) 원고회사는 피고회사에게 중대하지 않은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한화 166,666,667원 및 이에 대한 중재통지에 대한 답변서 제출일(2006. 1. 13.)부터 이 사건 중재판정일까지 연 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2) 위 (1)항을 제외하고 피고회사의 신청을 기각한다.

별지 3.

1. 피고회사의 2005. 5. 19.자 이메일에서 요청한 바와 같이, 원고회사가 스핀온 (spin-on)형 가솔린 오일필터 성능에 대한 유효성 시험 및 그 후 시험결과보고서 ('시험기준 및 보고서')를 수행할 때 적용한 시험기준을 명시한 문서 및 2005. 9. 29.자 이메일에 요청한 오일필터 부품번호 W712/38에 대한 시험기준문서
2. 2005. 9. 29.자 이메일에서 요청된 오일필터 부품번호 W712/38를 디자인할 때 원고 회사가 이용한 기준('디자인 기준')을 명시한 문서 및 2005. 6. 7.자 및 2005. 6. 13. 자 이메일에서 요청된 크랭크실 환기용(CCV) oil separator 부품번호 39 310 70 900에 대한 디자인 기준문서
3. 2005. 6. 13.자, 2005. 7. 12.자 및 2005. 10. 10.자 이메일에 요청된 원고회사의 CCV oil separator 부품번호 39 310 70 900에 대한 디자인 오작동모드 영향분석보 고서(D-FMEA), 제품 오작동모드 영향분석 보고서(P-FEMA)
4. 2005. 6. 13.자, 2005. 7. 12.자 및 2005. 10. 10.자 이메일에 요청된 원고회사의 CCV oil separator 부품번호 39 310 70 900에 대한 품질관리계획('품질관리계획')
5. 2006. 7. 12.자 이메일에 요청된 공기청정기 내의 공명기, 호스, 도관 제품에 사용된 자료선정 기준('자료기준') 목록
6. 2005. 5. 19.자 이메일에 요청된 북미로 수출된 2.4리터 엔진의 가솔린 승용차에 설 치된 스핀온형 가솔린 오일필터 및 2005. 6. 13.자 이메일에 요청된 원고회사의 CCV oil separator 부품번호 39 310 70 900에 대한 벤치마킹 보고서('벤치마킹 보 고서'). 끝.